



중소·중견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

기술보호 울타리 <https://www.ultari.go.kr>

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

로그인 | 회원가입 | 사이트맵

서비스 Service

- 기술보호 통합상담·신고센터
- 기술보호전문가 상담·지문
- 기술분쟁 조정·중재
- 기술임치 및 원본증명서비스
-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
- 기술지킴 서비스
- 기술보호아카데미
- 기술보호 자가진단

정보 Information

- 정보마당
- 기술보호 지침
- 알림소식
- 기술보호지원기관 정보

통합검색

중소벤처기업부

WA MS ACCESSIBILITY

Small and Medium Enterprises
Technology Protection Support Program

중소기업 기술보호지침

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관한법률 시행으로,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 기술이 소중하게 보호되어
기술 경쟁력이 강화되고, 더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
기술보호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.

중소벤처기업부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

ULTARI SERVICE

- 기술보호 길잡이
- 기술보호 통합 상담·신고센터
- 서비스신청

FAQ

지금 전화하시면, 즉시 해결해드리겠습니다.

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·신고센터

02-368-8787

공지사항 more

- 시스템 점검 안내(12/21) 2017-12-20
- 영업비밀, 특허 및 저작권 통합설.. 2017-10-17
- 시스템 점검 안내(10/17) 2017-10-13
- 2017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 고.. 2017-10-12
- 2017 산업보안 국제 컨퍼런스 안.. 2017-09-28
- 임시공휴일 10월2일(월) 휴무안내.. 2017-09-26

정책 가이드 +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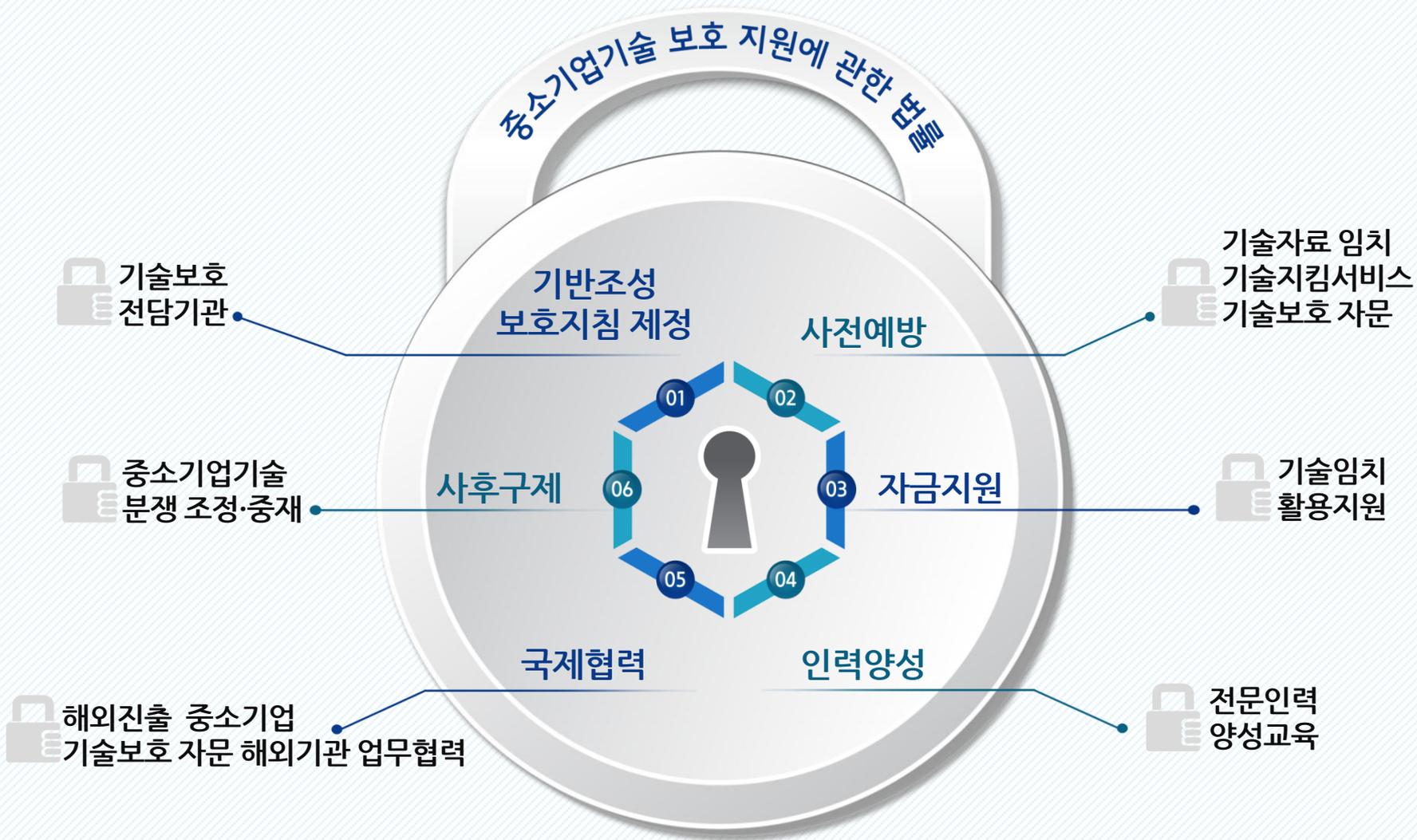
2017
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
「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」 바로가기!

< || >

기술보호
자가진단 +

원격지원
서비스 +
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, 제정 및 시행('14.11.29)



사업개요

- 기업에 맞는 상담을 제공하고 기술유출 피해기업 신고 접수 및 경찰청 연계를 지원

지원대상

- “중소기업기본법”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(단, 유흥·향락업, 숙박 등 업종 & 휴·폐업 중인 중소기업 제외)
- “중견기업법 시행령”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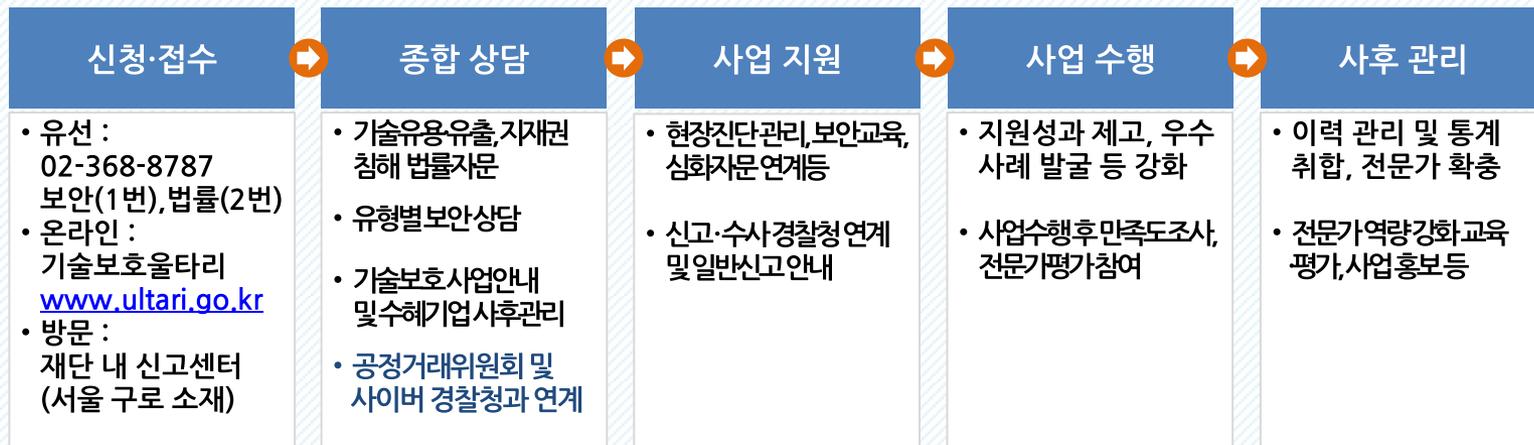
상담분야

- 보안상담, 법률상담, 신고·수사, 기술보호정책연계

센터운영

- 법률전문가 1명(변호사, 변리사), 보안전문가 1명(교수, 연구원 등), 지원사업 담당자 1명
- (유선) 02-368-8787
- (방문) 영업시간 내 방문상담 가능
- (온라인) 기술보호울타리(www.ultari.go.kr)에서 신청
- (운영시간) 평일 : 09:00~18:00 (운영일 기준)

지원절차



사업개요

• 기술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전문가의 진단,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업

지원대상

- “중소기업기본법”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(단, 유흥·향락업, 숙박 등 업종 & 휴·폐업 중인 중소기업 제외)
- “중견기업법 시행령”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

지원분야

보안정책

보안시스템

법률자문(분쟁대응)

지원내용

- 정보화 기기보안 자문
- 보안 관리 요령 및 코칭
- 기술보호 10대 수칙 안내
- 보안장비 점검
- 서버 진단 및 구축

-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대응
- 피해 복구 및 지원

- 기술유출 피해 기업 분쟁 대응 및 소송 등 자문 상담

3일간 무료 코칭, 심화자문 최대 7일 가능 (75%지원, 기업부담액 75,000원/일)

지원절차

상담신청

- 기술보호울타리 온라인 신청 (www.ultari.go.kr)
-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

전문가배정

- 지원대상 판정 후 전문가 배정
 - 지역 및 분야별 배정
- 변호사, 변리사,
보안전문가:
195명

현장사전진단

- 기술보호역량 진단
- 보안교육
- 심화코칭 여부 결정

(필요시) 심화자문

- 사전진단결과 보안문제 발생시 기업당면과제 해결
- 세부 보호방안수립

완료보고 만족도 조사

- 최종 완료보고서
- 온라인만족도조사

사업개요

•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정보를 재단 내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개발 및 보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

이용대상

- 타 업체의 모방이 우려되어 특허출원을 하지 않는 기업
- 거래 기업으로부터 핵심 기술 제공을 요구받는 기업
- 영업단계에서 거래 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

임치대상

기술상 정보

- 생산/제조방법
- 시설·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
- 물질 배합 비율·성분표
-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보고서
- SW 소스코드·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



경영상 정보

-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(재무, 회계, 인사, 마케팅, 노무, 생산 등)
-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등 (원가, 거래처,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등)

임치절차



계약신청서 및
임치물 접수



임치물
동일성 검사



계약체결 및
임치증서 교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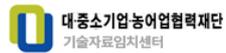


임치계약
관리



임치물
교부

기술자료임치센터 <https://www.kescrow.or.kr>



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기술자료임치센터

기술임치서비스

기술임치길라잡이

자료실

참여공간

활용지원서비스

임치센터 소개

Home | 로그인 | 회원가입 | 사업자등록증 | 사이트맵 | 이용매뉴얼

기술임치
계약신청

신청하기

기술임치
계약정보

바road가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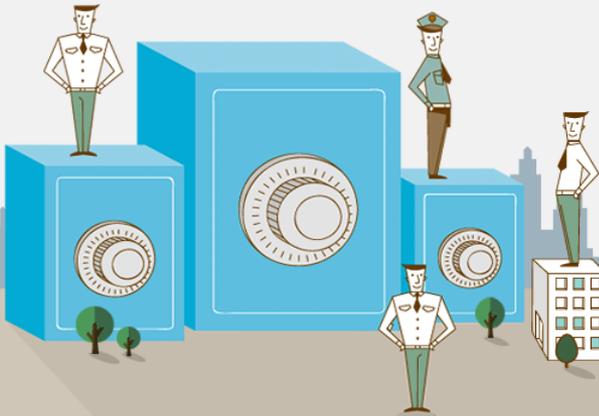
기술임치
대상물

기술임치
계약유형

기술임치
이용효과

기업의 소중한 가치를 위한 기술임치 서비스

중소기업과 대기업에
든든한 힘이 되어 드립니다.



기술임치 문의/상담 02) 368-8484

거래알선 및 불공정거래 상담콜센터 1670-0808

이용약관 | 개인정보처리방침 | 이메일주소수집거부



법인명 :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표자 : 김형호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10445

주소 : 08379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4층 Tel : 02)368-8484

COPYRIGHT(C) 2016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ALL RIGHTS RESERVED

회원가입 및
공인인증서 안내



기술임치
계약안내



R&D
임치안내



Q&A
바road가기



공시사항

질문게시판

언론보도

랜섬웨어 예방 요령 및 윈도우 업데이트

2017-05-15

기술자료임치센터 플러스친구 개설

2017-04-12

기술임치센터 사이트 보안점검 안내

2017-04-19

기술자료임치센터 이용환경 개선안내

2017-04-11

기술임치센터 전화교환기 교체 작업안내

2017-03-16



원격지원



이용매뉴얼



이용서식



이용사례



안내자료



찾아오시는길



관련사이트 바road가기

이동

효과1

개발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, 기술자료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사실 등을 입증

■ 이용사례(2009년 04월30일, 임치제도 이용)

- 경북 칠곡에 소재한 전자회사인 S사는 LCD/PDP TV용 액정 기술을 자체 개발하였다. S사는 인근 회사가 해당 기술을 입수하여 동일제품의 개발을 추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.
- S사는 **법적 분쟁 시 개발사실 입증**을 위해 **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**하였고, 이에 인근 회사는 해당 기술을 포기함에 따라 S사는 기술을 안전하게 지켰다.

효과2

수·위탁거래 시 거래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원천적으로 차단

■ 피해사례(2009년 10월19일, 한경비즈니스)

- 중소기업 S사는 각고의 노력 끝에 핵심 기술을 개발, 위탁기업에 납품을 시작하였다.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**기존 거래기업이 갑자기 거래를 단절하여 S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**. 알고 보니 거래기업이 S사의 해당 기술을 기초로 제3 기업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. 결국 S사는 부도를 맞았다.

지원대상

- 기술자료임치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
- 당해 기술 적용 매출 발생 여부 불구
- 제품화 완료/양산준비/양산단계에 있는 임치기술 사업화 희망 중소기업
- 임치기술에 대한 기업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 동의한 중소기업

지원유형

담보대출형

- 임치 기술의 기술가치평가등급(B등급 이상)에 따라 기술가치금액 이내의 자금 융자

기술거래형

- 임치 기술을 거래(기술사용 이전)하고자 하는 기업의 기술거래 활동 지원

지원내용

평가수수료 지원

- 기술가치평가수수료 전액 지원 (무료)

보증료 감면

- 보증수수료 감면 (최소 0.3 ~ 최대 0.5%)

담보대출 우대

- 대출금리 감면 (부분보증서: 최대 0.5%, 전액보증서: 최대 1.0%)
- 중도상환해약금 감면 (최소 30 ~ 최대 50%)

기술거래 지원

-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감면 (기술 거래액의 2%, 공공기관 적용기준)

■ 원본 증명 서비스 (2016년 7월 11일 지정)

고객사가 보유한 영업비밀 원본(전자문서)의 전자지문(Hash값)만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와 소유자,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


※ 전자지문(SHA-256bit Hash값)

전자문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자 값으로, 같은 데이터로부터는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나오나 정보가 조금만 변경되어도 전혀 다른 값이 생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원본의 위·변조 여부를 완벽히 증명가능

※ 타임스탬프

특정시점에 데이터가 존재했다는 사실과 그 시점 이후에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전자적 기술

■ 원본증명서비스 <https://proof.kescrow.or.kr/verification/>

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
원본증명서비스

로그인 회원가입 Sitemap Contact us

제도소개 원본증명서비스 정보마당

원본증명서비스

고객사가 전자문서로 보관중인 문서내용의
도용·유출등으로 영업비밀 및 기술자료의 보유자가
해당 문서 보류에 대한 입증에 필요한 경우
전자문서의 원본존재와 보유시점 입증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

자세히보기 >

원본증명 서비스 바로가기	신청관련 빠른 서비스	원본증명서 및 확인서 확인안내	이용절차가 궁금하세요?
<p>기업의 기술 및 중요 자료들을 인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원본증명 신청 바로가기원본증명 확인 바로가기원본증명 갱신 바로가기	<p>※ 등록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입력하세요</p> <input type="text"/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원본증명 서비스 개요 및 기능원본증명 서비스 이용절차안내포인트 구매안내 바로가기
공지사항	+	자주하는 질문	+

- 원격지원
- 자료실
- 찾아오시는길

조정·중재란

- **조정**: 조정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
- **중재**: 중재합의서 작성 후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 판정으로 해결하는 제도
 - ※ 계약서 조항 규정(사전 합의) 또는 별도의 서면(사후 합의)

중재합의(계약서 조항(안))

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“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”에 의한 ‘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 중재 위원회’의 조정 또는 중재로 해결한다.

※ 중재는 법원의 심판권을 배제하므로,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재합의가 있었다는 항변시 그 소는 각하됨

조정·중재 효력

조정

- 재판상 화해의 효력
 - ※ 합의실패시 중재 또는 소송 필요



중재

-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
 - ※ 분쟁의 종국적 해결(소송불가)

조정·중재 장점

전문성 및 공공성

- 전·현직 판사 및 변호사 등: 29명, 기술분야 전문위원: 21명
- 3~5명으로 구성된 조정 또는 중재부 지원

신속성 및 경제성

- 짧은 소요기간(조정: 3개월, 중재: 5개월)
- 저렴한 비용(조정: 10,000원~50,000원/중재: 20,000원~)

신청자격
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 의한 중소기업 중 기술보호 분쟁을 겪고있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자

형사 수사(경찰·검찰) 중인 분쟁 사건에 대해 조정·중재 신청 가능

※ 조정·중재는 민사절차와 형사절차를 별도로 진행가능

지원내용

-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
- 조정 신청시 법률 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(5백만원/1기업)
- 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이 조정 불성립시 소송비용 지원(5백만원 한도, 최대 1천만원)
- 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지원(필요시)

조정·중재 절차



지원내용

- 해킹과 같은 외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기술유출 방지 서비스
- 회사내 보안 장비(UTM, IPS, IDS, 방화벽 등) 보유시 보안관제서비스 무상 제공
-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서비스 및 악성코드탐지서비스 신청시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무상 제공

서비스내용

-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



• 사례: 휴일 야간 시간대 연구소장의 기술유출 시도 탐지 후 보안담당자에게 통보

• 조치: 해당 PC 분석 후 추가적인 기술유출에 사용된 클라우드 서비스 차단 조치 및 교육

• 사례: K사에 악성코드탐지 설치 후 바이러스 발견/다수의 악성 코드 탐지 후 삭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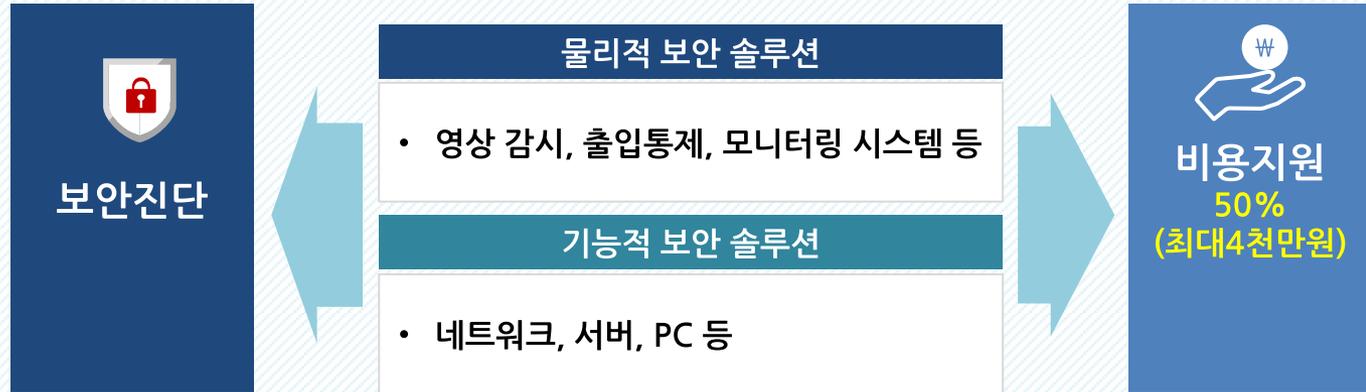
• 조치: 원격지원으로 이동식 저장장치의 초기화 작업 및 보안업데이트 진행

• 사례: N사에 이메일계정 해킹사고 발생/해커는 무역거래 상대 기업에 대한 접근하여 부당 거래 시도

• 조치: 이메일 접속 계정 IP 변경 사실 탐지/해의 거래처에 대한 유의 조치 진행

지원내용

- 중소기업의 보안 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설계 후 기업환경에 맞는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



※ 물리적보안시스템 구축의 경우 지문인식기·카메라 등 단순 장비구입비용은 기업부담금에 해당

- (일반과제)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(이동식 저장장치 통제, DLP, 논리적 망분리 등), PC·문서 보안솔루션 (DRM, 워터마크 등)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(출입통제, CCTV, 지문인식 등) 구축을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
- (해외연계과제)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의 보안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지원

지원대상
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(해외연계과제의 경우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)

※ 지원제외대상: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및 휴·폐업 중인 중소기업

※ 우선지원대상: 정보화 경영체제(MIS) 인증 기업, 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, 기술혁신형중소기업(INNO-BIZ), 벤처인증기업, 싱글PPM인증기업, 글로벌강소기업, 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”에 의한 여성기업, “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”에 의한 장애인기업, 방산(물자)업체, 기술사관육성사업단 협약기업, 개인정보보호 인증(PIPL)기업

신청 및 문의

-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-388-0758, 0766

사례

- G사 연구소장은 외장형 하드디스크 기술자료를 클라우드 웹하드에 무단 복사 후 경쟁업체에 유출 시도
- 정부지원으로 구축된 정보 유출 방지 보안 시스템으로 차단함

10대 핵심 수칙

- | | | | | |
|---|--|---|---|---|
| <p>1</p> <p>기술보호를 위한 관리규정 수립 실시</p> <p>기술보호 관리규정 제정을 통하여 영업 비밀 분류, 취급방법, 종업원의 의무, 영업 비밀 보관·파기, 출입자통제 등을 정하여 관리해야 합니다.</p> | <p>2</p> <p>보안관리전담인력 필수 지정</p> <p>보안 담당자를 지정하여 기술보호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.</p> | <p>3</p> <p>전직원대상 기술보호 교육 실시</p> <p>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</p> | <p>4</p> <p>전 직원 대상 비밀유지서약서 체결</p> <p>모든 직원과 비밀유지 서약서를 체결하고, 핵심개발자 및 임원과는 전직금지서약서를 체결하여 기술유출을 예방해야 합니다.</p> | <p>5</p> <p>핵심인력 퇴직시 철저히 사후관리</p> <p>인력의 퇴직시 영업비밀 인수인계는 철저히 하고, 서류/기술정보 반납 및 파일삭제 확인서를 징구하며, 영업비밀 준수 의무 및 처벌규정을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.</p> |
| <p>6</p> <p>중요기술은 영업비밀로 분류</p> <p>기업자산(기술) 중 영업비밀을 파악·등급(극비/비밀/대외비)을 부여하고, 별도로 표시하여 관리해야 합니다.</p> | <p>7</p> <p>중요서류는 별도보관, 반출관리</p> <p>중요서류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며, 자료를 임의로 복제·반출할 수 없도록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관리해야 합니다.</p> | <p>8</p> <p>중요설비·장치는 통제구역으로 설정</p> <p>개발 및 제조설비 지역은 ‘출입통제구역’으로 지정·인가된 인원만 출입을 허용하며, 카메라·스마트폰 반입을 금지시키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합니다.</p> | <p>9</p> <p>중요기술은 특허 및 기술임치로 보호</p> <p>개발한 기술은 특허 등록하고, 영업비밀은 기술자료 임치로 보호해야 안전합니다.</p> | <p>10</p> <p>정보시스템 보안필수</p> <p>네트워크 인증, 데이터 암호화,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, 허가된 USB사용 및 기술자금이(보안관제) 서비스를 활용해 기술자료를 지켜야 합니다.</p> |

개요

-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인식개선과 보안역량 수준 제고를 위한 설명회 개최 및 보안전문가 강의 지원(무료)

◇ 추진 근거 (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)

▲ 법령 17조 중소기업 기술 보호 홍보·교육

- 중소기업부장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·중소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홍보·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교육내용

-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소개
 -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,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·자문, 기술자료 임치제도, 기술분쟁조정·중재 등 소개
-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침
 - 기술거래의 유형, 중소기업기술유출 피해현황, 기술유출 발생시 대응 절차 및 방법 등 소개
- 기술보호 인식개선 전문가 특강
 -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례,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가 강의

추진방법

- 협력중소기업 대상 행사와 연계하여 기술보호 설명회 추진

추진기간

• 상시접수

문의처

•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박태우대리(☎: 02-368-8737)
•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노기호사원(☎: 02-368-8924)

기업의 정보보안, 당신과 기업을 살립니다



중소벤처기업부



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

기술보호울타리
www.ultari.go.kr

기술보호 통합상담 · 신고센터
(02) 368-8787